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

■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49호)

2025.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주민의원 등 21인
2. 제 안 일 : 2024. 12. 3.
3. 회 부 일 : 2024.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은 우리나라의 구속제도에 대해 경각심을 주었음. 해당 사건의 발생 이전에 이미 가해자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300차례가 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으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사이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게 되었음.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구속, 불구속의 양자택일적 결정만 할 수 있고 구속사유도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극히 제한적이므로, 위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논란이 있어 왔음.

이에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적절한 석방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조

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고자 함
(안 제201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일정 조건의 부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판사가 영장 발부와 동시에 현행 제98조¹⁾의 보석 조건 등을 전제로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또는 조건부 영장발부제도)’를 구속영장 심사단계에 도입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第201條(拘束) ① ~ ④ (생략) <신설>	제201조(구속 및 조건부 석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제98조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는 때에는 제4항 전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제98조 각 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 피의자

1)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신 설>

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1. 차량운행의 전면금지, 또는 지방 법원판사가 특정하는 차량의 운행 금지,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판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그 차량을 보관 하거나 운전면허증 등 차량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맡겨둘 것
 2.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중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 할 것
 3. 의료기관 등에 의한 검사, 치료를 받거나 그 목적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할 것
 4. 피의자가 부담하는 배우자나 자녀, 그 밖의 가족 등에 대한 부양료, 교육비 등의 지급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
 6. 그 밖에 피의자의 재범방지 또는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지방법원판사가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 ⑥ 검사는 제5항의 결정에 의하여 조건부로 석방된 피의자가 그 조건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보호관찰소 등 관공서나 그 밖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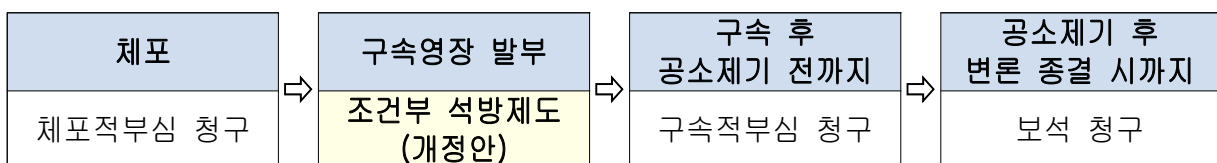
	<u>공사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 등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는 검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⑦ 제5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98조, 제99조, 제10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0조의2,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판사는 공소제기 이후의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u>
<u><신 설></u>	<u>⑧ 제5항제5호의 조건을 정한 제5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를 준용한다.</u>
<u><신 설></u>	<u>⑨ 제5항의 결정은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u>
<u>⑤ (생 략)</u>	<u>⑩ (현행 제5항과 같음)</u>

현행법상 판사는 영장의 심사·발부단계에서 구속 또는 불구속의 양자택일적 결정만 가능함. 이에 따라 구속과 불구속의 경계에 있는 사건의 경우 범죄 중대성이나 심각성 등에서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아니면 불구속’이라는 현격한 결과의 차이가 초래될 수 있어, 사안에 비례한 다양한 결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방지나 형 집행 확보 등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불구속 수사에 비하여 피의자의 실질적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과도한 구속영장 집행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음.²⁾

이에 개정안은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영장청구에 대하여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를 경우 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영장 기각’이나 ‘영장 발부’ 외에 ‘조건부 영장 발부’ 결정도 할 수 있게 됨. 예를 들어, 구속요건 중 피의자의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지만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등을 조건으로 ‘도주 우려’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만 ‘조건부’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결정 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임.

[형사절차상 각 단계별 인신구속에 대한 석방제도]



개정안은 이를 통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비례 원칙에 맞는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속수사 비율을 낮춰 현행법상 불구속수사 원칙 구현을 강화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및 피의자의 방어권을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입법취지가 인정됨.

2) 한국경제, “영장 남발하는 檢... ‘구속 만능주의’ 논란”, 2018. 6. 12. 등

다만, 개정안 심사 시 다음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도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시 판사의 재량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영장 발부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며, 보증금 납부 조건 등에 따라 오히려 사회특권층에게 유리한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³⁾도 있음.

둘째, 구속영장 심사단계에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종전대로라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였을 피의자에 대하여 대체처분 등 조건부과와 함께 영장을 발부하는 조건부 ‘구속’을 결정할 수 있어 ‘구속비율’을 낮추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영장 심사의 본안 재판화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⁴⁾

참고로, 영장단계 조건부 석방제도는 2005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2006년 정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안⁵⁾에 담아 제출한 바 있으나, 당시 우리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① 본 제도는 일반적으로 구속기간이 장기인 국가에서 도입하고

3) 국회입법조사처, “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 도입 논의”, 이슈와 논점, 2011. 10. 10.

4) 금태섭, “인신구속제도의 개선방안”, 인신구속제도 개선토론회Ⅱ,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2005. 7.

이는 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영장 심사단계에서 본안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가속화되어 왔으며, 특히 영장 심사 기간에 제한이 없고 판사에 따라서는 혐의유무뿐 아니라 피해회복 여부 등 정상에 관한 사항까지 심리하거나 체포된 상태에서 합의기간을 부여하는 경우까지 있어, 구속을 피하기 위하여 본안 재판도 받기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강요당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데, 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될 경우 그 경향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임.

5) 정부 제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 6. (의안번호 제173759호)

있는 것으로, 구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는 도입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점, ② 조건부 석방결정과 관련하여 전관예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③ 보증금 등 납부 여력이 있는 부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⁶⁾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⁷⁾ 미국의 경우 피의자를 체포 후 판사 앞에 인치함으로써 형사절차가 시작되는바, 최초의 판사 대면기일은 피의자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이때 보석이 원칙적으로 허가됨.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금심문 절차로 이어지고, 이때 판사는 개인적 서약, 보석금 지불 약속, 전자발찌 착용 등 조건을 부가하여 석방 명령을 할 수 있음.

독일의 경우 수사와 공판 전 과정에 걸쳐 통합된 구속심사제도를 두고 있는바,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보다 더 가벼운 처분으로 구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 또한,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심사청구를 하면 법원은 구속의 적법 여부와 계속 구금의 필요성을 심사하여 구속유지·구속취소·구속집행유예 중 하나의 결정을 함.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피의자의 구속적부심 청구나 검사의 영장 재청구 모두 불가능하고, 영장 재판에 대한 준항고만 가능함.

6)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2007. 2. 5. 등 참조

7) 법원행정처 자료 및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보석조건부 영장발부제 도입 논의”) 등 참조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법무부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개정안과 같은 취지 법률안⁸⁾에 대하여 ‘조건부 석방제도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초점을 둔 제도로 피해자가 보복범죄 가능성에 더 노출되게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고, 이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법관 또는 변호인 조력 여부에 따른 편차 등이 발생할 우려 등이 존재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⁹⁾

반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조건부 석방제도가 현재 인신구속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하여 불구속 수사원칙을 확대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 보호를 함께 도모할 수 있으며, 구속 여부가 수사 성공의 가늠자로 인식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형사사법절차의 중심을 구속재판에서 본안재판으로 이전하여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한편, 개정안에 따라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은 현행 제98조¹⁰⁾에 따른 보석 조건 외에도, ① 차량운행

8) 조웅천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9. 30. (의안번호 제2117661호),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11. 7. (의안번호 제2118128호),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 11. 7. (의안번호 제2118136호)

9) 아울러,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구속수사 기간은 최장 30일로 단기이기 때문에 장기 구속에 따른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 석방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 등 국가와는 달리 그 도입 필요성이 낮은 점, 체포·구속적부심, 구속취소, 보석 등 다양한 석방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조건부 석방제를 추가로 운영할 필요성이 적다고 설명하고 있음.

10)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의 전면금지, ②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물질의 사용금지, ③ 의료기관 입원, ④ 가족 등에 대한 부양료·교육비 등 지급사실 증명, 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⑥ 그 밖에 판사가 정하는 적당한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전제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현행법상 보석 조건 외 조건 추가의 필요성 및 각 조건의 적절성·실효성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해 보임.

둘째,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적부심사’와 관련하여 현행 제214조의2제5항¹¹⁾ 단서는 ①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②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명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영장 심사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 시에도 이러한 제한 사유를 함께 규정할 필요성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임.

-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2.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제출할 것
 3.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등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일 것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5.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6.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할 것
 7.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8.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
 9.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 11)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公所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셋째, 개정안은 영장 심사단계에서의 조건부 석방 결정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는바, ‘구속적부심’의 경우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한 항고가 가능하다는 점¹²⁾을 고려할 때, 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에 대한 검사 및 피의자의 불복절차를 둘 필요성은 없는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¹³⁾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및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한다는 입법취지와 함께, 국민의 일반적 법 감정, 해외사례 및 관계기관 의견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048

12) 대법원 1997. 8. 27. 선고 97도21 결정 참조

13) 다만, 영장 ‘발부’ 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고, 영장 ‘기각’ 시 검사는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영장 발부 여부 자체에 대하여는 항고와 같은 불복절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인바, 조건부 석방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이는 ‘석방여부’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석방조건의 적절성’에 대한 것으로 한정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는 과거 유사 법률안에 대하여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의견도 마찬가지임.